

의안번호	2215772
의 퇴 인	서명옥의원
회 답 일	2026.2.5.
추계번호	25C7441

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3조 (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·징수 등)	- 연초(연초를 원료로 한 니코틴을 포함한다)를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한 담배가 아닌 담배에 대하여는 각 100분의 50을 감경한다.(제1항 단서 신설) ※ (부칙 제1조) 이 법은 「담배사업법」 제2조 제1호 개정규정이 시행하는 날부터 시행한다. (부칙 제2조)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부과된 부담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.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23조 (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·징수 등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·징수 등(안 제23조)

- 개정안에 따라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제조된 담배의 부담금을 2년간 한시적으로 절반 수준으로 감경할 경우 부담금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
 - － 「담배사업법」 (법률 제21216호, 시행 2026.4.24.) 개정으로 합성니코틴 담배가 부담금 부과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, 개정안은 영세사업자의 초기 부담을 완화하고자

2년간 한시적으로 부담금을 절반 수준으로 경감하고자 함

- 개정안에 따른 부담금 수입 감소분을 추계하기 위해서는 합성니코틴 거래량과 가격 등의 기초자료가 필요하지만, 현시점에 관련 자료가 집계되지 않고 있어 추계가 곤란함

- 현재 합성니코틴 국내 생산량 및 판매량은 집계되지 않고 있으며¹⁾, 관세청 통관자료에 따르면 합성니코틴은 주로 전자담배 용액으로 수입되고 있음
- 합성니코틴은 원재료 형태로 수입되기 때문에 통관 이후 제조·판매자의 제품가공 및 판매 방식 등에 따라 부담금 규모에 큰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
- 또한, 통관자료는 중량단위로 집계되고 있으므로 용액과 용기의 구분이 불가하여 과세 단위인 니코틴 용액 부피의 산정에 어려움이 있음

-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임슬기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임슬기	02-6788-4740	sg.lim@assembly.go.kr

1) 화학물질안전원 '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'(icis.me.go.kr)에 따르면 현재 합성니코틴(RS-Nicotine, CAS No. 22083-74-5) 국내생산분의 시중 유통판매량은 없는 것으로 파악